제 19 차 교단혁신세미나

초기 교화단 상시 일기의 의의

—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세칙」을 중심으로 —

원불교 정책연구소
류 정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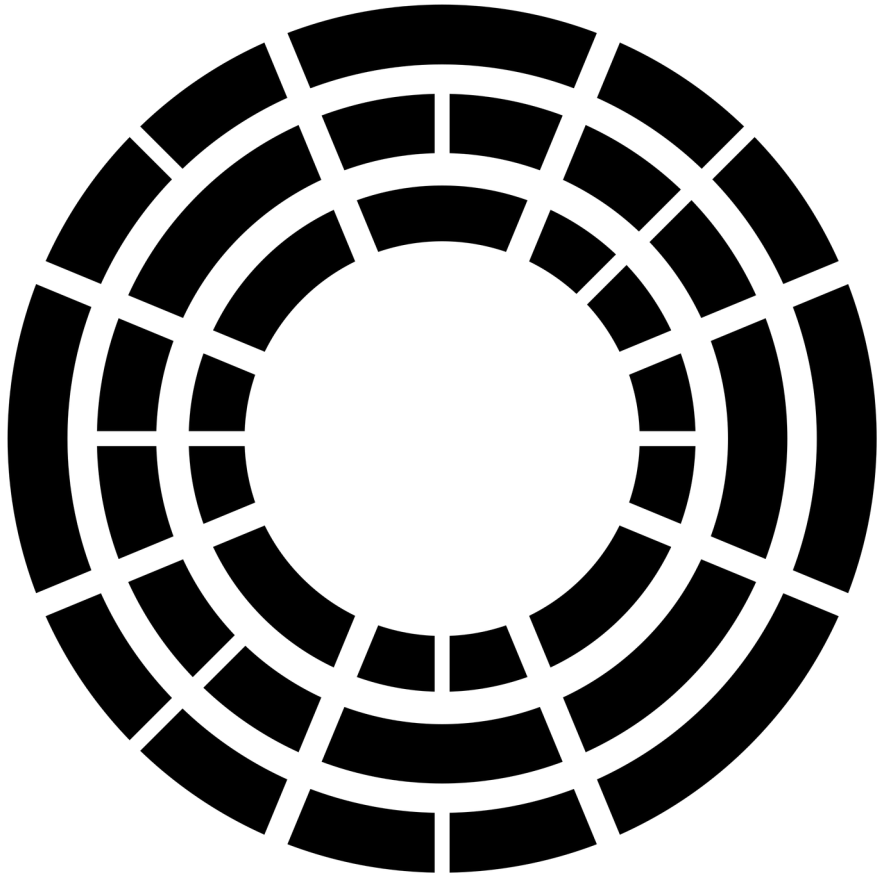
관련 주요 연혁 (교화단 + 훈련 + 평가)

1. 소태산 대종사 대각 , 원기 원년 (元年), 1916 년 .
2. 원기 2 년 (1917) 7 월 26 일 , 남자 수위단 조직 , 8 방 단원 (원기 3 년 정산종사 중앙 서임), 『성계명시독 (誠誡明示讀)』으로 훈련 . 3·6 예회 겸 단회 (團會) 에서 점검 .
3. 영산 방언 : 원기 3 년 (1918) 4 월 ~ 원기 4 년 (1919) 3 월
4. 법인 기도 : 원기 4 년 (1919) 3 월 시작 . 3·6 일에 방위에 따른 기도식 거행 . 팔괘기 게양 . 8 월 21 일 혈인 법인 성사 . 10 월에 기도 해재 . 새불법 선언 [새 회상 건설 선언 - 총서편]
5. 변산 제법 : 원기 5 년 (1920)~ 원기 8 년 (1923)[4 년간] 교강 제정 .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 + 공부의 요도 (삼학 팔조)[교의편]
6. 원기 9 년 (1924):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및 익산 총부 건설 시작 .
7. 원기 10 년 (1925): 3 월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 정기 훈련법 + 상시 훈련법 [수행편]
 5 월부터 제 1 회 하선 결제 . 8 월 학력고시법 + 학위등급법 발표
8. 원기 12 년 (1927): 『불법연구회 규약 (規約)』 발행 (『규약』)
9. 원기 16 년 (1931):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統治組團) 규약 (規約)』 발행 (『단규』)

『성계명시독 (誠誡明示讀) 』 (원기 2·1917)

- 최초의 단 구성 : 원기 2 년 (1917) 에 먼저 8 방위의 단원을 구성하고 원기 3 년 (1918) 에 정산 종사를 중앙으로 임명
- 단회 및 상시 일기 : 점차 1·11·21 일의 삼순일 (三旬日) 에 예회 보는 법을 정하고 『성계명시독』 이라는 책자를 두어 10 일 동안 지낸 마음을 청 (靑)· 홍 (紅)· 흑 (黑) 의 점으로 조사하게 하여 신성과 실행 여부를 대조
- 『성계명시독』 은 조선말에 유행한 민간 도교의 『공과격 (功過格) 』 과 유사
- 『공과격』 : 선악 (善惡) 에 대하여 점으로 조사하여 '격도 (格圖)' 나 '격목도 (格目圖)' 에 1 년 간의 점수를 기재

단 (團) 구성과 시방 (十方) 및 팔괘 (八卦) 의 의미



< 팔괘기 (추정)>



< 단원들의 기도 >(추정)



< 정산 종사 (20 세) 의 기도 >(추정)


大宗師
一山
八山
二山
鼎山
七山
三山
四山
五山
六山



<9 방위와 산상 (山上) 기도지 >



단장 소태산 대종사



일산 이재철



팔산 김광선



이산 이순순



칠산 유건



정산 송규



삼산 김기천



육산 박동국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교기 (教旗) 로서의 팔괘기 (八卦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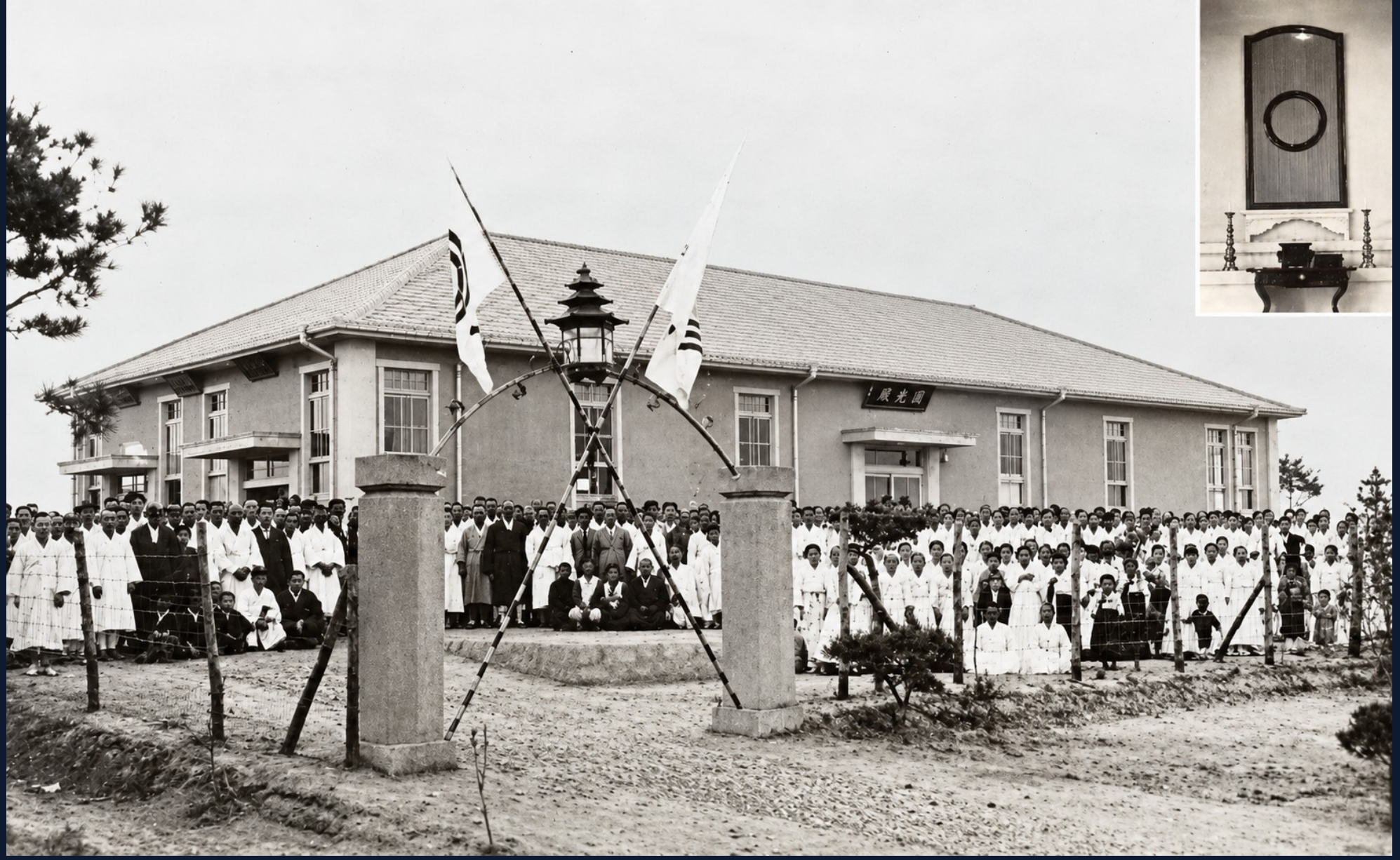


< 본회 시창 13 년 제 1 회 기념 총회원 >(AI 복원)



< 족자의 「교리도」 >

* 원기 17 년 (1932) 발행한 《보경육대요령》에 「교리도 (教理圖) 」 처음 등장 .



< 원기 20 년 (1935) 4 월 , 익산 총부 대각전 준공 >
정면 불단에 심불 일원상 (心佛一圓相) 정식 봉안 (AI 복원)



< 원기 25 년 지방 회원 강연 기념 >(AI 복원)



< 원기 35 년 2 월 군산지소 봉불식 기념 , 연화장 (蓮花章) 교표 >(AI 복원)

팔괘와 시방의 의미 : 법신불 일원상

> “ 이 원상 (圓相) 의 진리를 각 (覺) 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 (吾家) 의 소유인 줄을 알며 …”
>
> (『일원상 법어 (一圓相法語) 』)

- 단 (團) 조직은 법신불 일원상의 시방주의 , 대세계주의를 응 (應) 한 제도 .
- 각 단원의 방위가 중요 .

『성계명시독』의 의의

1) 먼저 교화단을 결성하고 그 교화단 활동의 핵심을 상시 일기의 기재와 점검에 두었다는 것 . 즉 , 교화단과 상시 일기는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 .

2) 교화단은 10 방을 대표하고 , 10 방의 단원은 우주 전체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각 단원의 수행과 신앙은 곧 10 방을 대표하여 상시일기를 기재하는 것 . 즉 , 각 단원의 상시일기 기재가 단순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시방을 응하여 수행과 신앙을 진행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

3) 상시 일기의 본래 목적은 당일 당일의 죄복 결산에 있다 .

훈련법 제정 (원기 10·1925)

▪ 원기 10 년 (1925) 3 월 ,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발표

1) 정기 훈련 :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

- 하선 : 음 5 월 6 일 결제 -8 월 6 일 해제 (3 개월).
- 동선 : 11 월 6 일 결제 - 이듬해 2 월 6 일 해제 (3 개월).
- 11 과목 : ① 염불 (念佛), ② 좌선 (坐禪), ③ 경전 (經典), ④ 강연 (講演), ⑤ 회화 (會話), ⑥ 문목 (問目), ⑦ 성리 (性理), ⑧ 정기일기 (定期日記), ⑨ 주의 (注意), ⑩ 조행 (操行), ⑪ 수시 설교 (隨時說敎) 등 .

훈련법 제정 (원기 10·1925)

2)상시 훈련 : 상시로 공부하는 방법

- 「상시 응용 주의사항」 6 조 (條) +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 조
- 이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대조 연습하기 위하여 , 유무념 조사와 **상시 일기 조사법 제정** .
- 문자 서식에 능치 못한 사람을 위하여 태조사 (太調査) 법 (흰 콩 + 검은 콩) 을 두어 유무념을 대조하게 함 .
- 정신 · 육신 · 물질 3 방면으로 혜시 · 혜수한 것도 대조 기재 (공부 + 사업)
- 공부 · 사업 · 생활 , 3 방면의 **의견 제출**과 삼십 계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
- 이 공부를 달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월 단장 조사법을 제정 , 년마다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 제정 .

원기 10 년 (1925) 8 월 : 학력고시법 + 학위등급법 발표

1) 학력고시법 :

- 수양 · 연구 · 취사의 3 과목에 대하여 고시 (考試)
- 실력에 따라 공부인을 각 과목 내에 '①갑 (甲)·② 을 (乙)·③ 병 (丙)·④ 정 (丁)·⑤ 무 (戊)' 라는 등별 (等別) 로 구분하여 5 개반에 배정 .

2) 학위등급법

①보통부 (普通簿)·② 특신부 ·③ 법마상전부 ·④ 법강항마부 ·⑤ 출가부 ·⑥ 대각여래부

- 6 급 (級) 의 6 부 (簿) 와 그 사이에 각 예비부를 두게 함 .
- 매 3 년마다 3 강령 [삼학] 을 표준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게 배정 .

원기 12 년 (1927) 3 월 , 『불법연구회 규약』 발행

구분	항목 및 내용
1. 규약	불법연구회의 유래 · 취지 설명 및 규약의 내용
2. 연구인 공부순서 (13 항목)	① 연구의 강령건 [삼학 (三學)]; ② 연구시에 진행건 [진행 4 조]; ③ 연구시에 사연건 [사연 4 조]; ④ 보통부 10 계문 ; ⑤ 특신부 10 계문 ; ⑥ 상전부 10 계문 ; ⑦ 솔성요론 ; ⑧ 재가공부인 고락의 설명 ; ⑨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 **⑩ 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사항 [상시응용주의사항]; ⑪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⑫
3. 세칙	규약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14 항)

『규약』「세칙」

13. 해재시 (解裁時) 검사규약 (檢查規約)

1) 연구인의 3 개월 수양력을 검사하며 연구력을 검사하며 마음 작용과 육신 작용을 검사하며 3 개월 비용금을 검사하여 검사증을 연구부에 접수함 .

14. 연구인 (研究人) 출가규약 (出家規約)

2) 연구인이 본가 (本家) 를 떠나 선원 (禪院) 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하면 12 개월 입선 (入禪) 후에 회중 (會中) 공의 (公議) 를 얻어 출가원서 (出家願書) 를 받기로 함 .

상시 일기 (매일 성적) 시행 내용 (《월말통신》)

시기	호수	핵심 내용
원기 13(1928). 양 5	제 1 호	단원 성적 조사표 양식
원기 13(1928). 양 6	제 2 호	단원 성적 조사 기재 방식
원기 13(1928).9	제 7 호	대종사 경성에서 단원 매월 매일 성적조사표 용지 인쇄 . 『단규』 및 조사방식에 대해 강급하고 실시할 것 권장 .
원기 13(1928).12	제 9 호	단회의 순서 나타남 . ① 출석원 점명 (點名), ② 심경 (心經) 독창 (讀唱), ③ 단원성적 조사방법 설명 , ④ 단원 주의사항 설명 , ⑤ 본회 창립요론 , ⑥ 단금수입 , ⑦ 의견심의 , ⑧ 단원성적조사
원기 13(1928).12	제 10 호	총 · 지부 단회 및 예회에서 ‘단원 매일일기방법’ 실례 설명 · 문답 .
원기 14(1929).1	제 11 호	상시 일기 기재법 설명 : ① 재가응용주의사항 (6 조), ② 재가공부인 교무부 와서 하는 책임 (6 조), ③ 의견 제출 , ④30 계문
원기 14(1929).2	제 12 호	야학을 중지하고 총부 대중 저녁 8-9 시까지 일기 기재
원기 14(1929).4	제 14 호	태조사 (太調査): 일기 · 유무념 이행 불능자에 백흑태 (白黑太) 로 유무념 대체
원기 14(1929).8	제 18 호	교법의 우수성 가운데 입선전문훈련법 , 매일 성적 조사법 , 유무념대조법 등을 거론함 .
원기 14(1929).9	제 19 호	이공주 감상문 : 상시일기의 의의 , 기재 방식 , 기재 효과 , 기재 독려 등에 대하여 밝힘 .
원기 14(1930).10~	제 20 호 이후	일기성적조사 , 단증 · 일기표 · 유무념표의 배부 · 관리 담당자 지정

원기 13 년 (1928) 12 월 , 《월말통신》 제 9 호

단회의 순서 :

① 출석원 점명 (點名) - ② 심경 (心經) 독창 (讀唱) - ③ 단원 성적 조사 방법 설명 -
④ 단원 주의 사항 설명 - ⑤ 본회 창립요론 - ⑥ 단금 수입 -⑦ 의견 심의 -
⑧ 단원 성적 조사

- 대체로 이러한 식순과 유사한 내용으로 단회가 이루어짐 .

《월말통신》 제 12 호 (원기 14·1929)

- 대종사께서 일반 대중의 일기 공부가 능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당시 행하던 야학 (夜學) 을 중지하고 일기법을 순숙하기를 제안함 .
- 대중은 일기방식의 예 (例) 에 대하여 일일이 문답하는 모습이 나타남 .

> “ ‘ 아즉것 제군 (諸君) 의 **일기 공부가 능 (能) 하지 못하야 경계를 당해도 당한 줄을 모르고** …제군 (諸君) 은 당분간 야학을 중지하고 일기의 방식을 순숙 (純熟) 하도록 연습함이 엇더할꼬’ 하섯다 . 제인 (諸人) 은 일제히 낙종청명 (樂從聽命) 하고 근경 (近頃) 은 매석 (每夕) 8 시로 위시 (爲始) 하야 동 (同) 9 시까지 약 (約) 1 시간 동안 대중이 집합하야 당일 각자의 경계 처리한 것과 일기방식의 예 (例) 를 매거 (枚擧) 문답하고 파석 (罷席) 하난 중이다 .”

- 총부 대중은 매일 8 시부터 9 시까지 모여 함께 상시 일기 기재에 대하여 일일이 문답하면서 기재함 .
- 상시 일기의 주요 내용은 경계의 인지 (認知) 와 그 처리에 있음 .
- 원불교 수행의 근간은 경계를 통한 마음공부로서 심신간에 경계를 당하여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그 경계를 잘 처리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 .

수행에 있어서의 의의

1) 상시 일기가 경계 (境界) 를 통한 공부란 점이다 .

2) 야학 (夜學) 은 교리 가운데 ‘타자녀 (他子女) 교육’ 을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문맹 (文盲) 퇴치의 일환으로 전개된 매우 중요한 대사회불공 (對社會佛供) 의 실천

> “ 이로써 새 회상의 교육 사업은 , 초기의 영산 학원 · 총부 학원 및 총부를 비롯한 각처의 야학원 사업과 , 해방 후의 국문 강습소 및 학림 교육을 거쳐 , 이제 회상의 개교 정신과 국가의 교육 이념을 조화한 본격적 교육사업으로 발전하여 , 마침내 원광학원군 (圓光學園群) 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교사』)

- 교단의 교육 사업은 야학 사업에서 비롯하여 학교 건립으로 이어짐 .
- 대종사께서는 그 보다는 먼저 상시 일기의 기재 방식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야학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 하도록 하였다 .

초기 교단의 ‘엿장사’

- 교단 초창기의 가난한 시기에 총부 유지의 방편으로 총부를 건설한 해인 원기 9 년 (1924) 12 월에 엿 제조와 판매 행상 사업을 전개하여 약 1 년 간 지속 .
- 이익 (利益) 도 박 (薄) 하지만 **외경 (外境) 의 접촉이 심하여 공부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서 원기 10 년 (1925) 7 월에 폐지 .
- 대종사께서는 ‘이사병행 (理事竝行)’ 과 ‘영육쌍전 (靈肉雙全)’ 을 주장하면서도 ‘이 (理)’ 와 ‘영 (靈)’ 이 ‘주 (主)’ 가 됨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상시 일기가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統治組團規約) 』

(『단규』 발행 , 원기 16·1931)

1. 원칙 (原則)	총 14 장	단 조직과 운영
2. 세칙 (細則)	총 1 장 . 공부 방면 및 사업 방면 .	제 1 절 단원으로서 매일 일기 조사법
		제 2 절 단장으로서 단원의 일기 성적을 매월 조사하는 법
		제 3 절 사업에 관하여 단장의 겸무 (兼務)
3. 부칙 (附則)		

- 『규약』 과 『단규』 는 체 (體)· 용 (用) 의 관계 .
- 『단규』 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약』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단규 (團規) 원칙 (原則)

제 10 장 단원 (團員) 의 권리와 의무

제 47 조

2.단원은 매월 단회 (團會) 시 공부 · 사업 · 생활 3 방면에 관한 **자유 의견**과 감각 · 감상 · 문목 (問目)· 처리건 등을 제출하여 본회 (本會) 의 영원한 법 (法) 이 되게 함 .

3.단원은 관할 단장의 지도에 순응하며 , 노혼 (老昏)· 열반 · 탈퇴 · 병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고 (事故) 가 유 (有) 하기 전에는 **단회에 출석함** .

9.본 단규를 준행 (遵行) 하며 단원의 **의견 · 감각 · 감상 · 문목 · 처리 등을 감정 (勘定)** 하여 등급을 판정 (判定) 함 .

단규 (團規) 원칙 (原則)

제 11 장 단장 (團長) 의 권리와 의무

제 48 조

1.단장은 해당 단원의 공부와 사업의 선 (善)· 불선 (不善) 을 조사하여 지도 감독함 .

2.매년 연말에는 단원의 12 개월 **공부 · 사업의 성적과 신분검사를 일일히 시행**하여 이상 단장에게 보고하고 , 이상 단장은 다시 교무부에 보고함 .

3.단장은 해당 단원의 특별한 변동 (變動) 과 중대한 일은 하시 (何時) 든지 교무부에 보고함 .

세칙 (細則) 에 대한 설명 (『단규』)

- 단원은 자기의 성적을 자기가 능히 기재할 수 있을 것 .
- 단장은 **단원의 성적을 능히 조사 감독**할 수 있을 것 .
- 단원은 항상 자기의 양심을 대조하여 선악 간 여하 (如何) 한 일이라도 사실을 기재한 후 사실로써 단장의 조사와 문답에 응할 것 .
- **단장 (團長) 은** 단원의 성적을 조사할 때 단장조사표에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기재하지 않은 것과 형상 (形像) 없는 심리 (心理) 까지 조사하고 문답**하되 , 혹 단원의 허위와 가식이 드러난다 하여도 백방 (百方) 으로 설유 (說喩) 하고 권면할 뿐이요 조금도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을 것 .

『단규』「세칙」의 기재 양식 (총 6 종)

조항			제목	세부 양식
제 1 장	제 1 절	제 2 조	단원 매월 매일 성적 조사표 (6 종)	① 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 사항 , ②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 ③ 사업성적 , ④ 부채표 , ⑤ 의견제출 , ⑥ 십계문
		제 4 조	공부인 유념무념 매일 응용시 대조표	
	제 2 절	제 6 조	단원 매년 매월 성적 조사법	① 공부 성적 , ② 사업 성적 , ③ 부채표 , ④ 의견 제출
		제 8 조	단원 유무념 성적 매월 조사표	
		제 9 조	신분검사표	① 부당등급 , ② 당연등급
			수지대조	혜수 · 혜시 · 수입 · 지출 · 대부 · 차용

- **내용상 3 종** : ① 매일 단원 일기 ·② 매월 단회에서 단장 보고 ·③ 매년 신분검사

‘재가 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 사항’ 기재 양식 (『단규』「세칙」)

조사 연월일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비고
			교과서 (『규약』)											
			음강 (音講)		의지 (意旨) 해석		한자 (漢字) 연습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창 연월일	/	○	1	30	2	20	1	20	2	30	1	20	○	
//														
//														
1 개월 평균	○	/											/	

『육대요령 교리도』 : ① 응용시 취사 , ② 응용전 연마 , ③ 공간 (空間) 시 경전 연습 , ④ 공간시 연구 , ⑤ 공간 시 수양 , ⑥ 응용후 대조 [삼학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와 팔조 (신분의성 불신탐욕나우) + 솔성요론 + 계문의 범과 (犯過) 대조]

1)1 조 ·2 조 ·6 조 : ① 당일 (當日) 당하는 경계 수 (數) 를 분간 (分揀), **② 반수 (半數) 이상** 이행한 경우에 **‘실행 (／)’** 한 것으로 기재 . **미실행 ‘○’ .**

2)2)1·2·6 조의 1 개월 합계 (合計): **반수 16 일 이상** 이행한 조 , 실행한 것으로 기재 .

재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조사 연월일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비고	
							상	하
시창 연월일	3	4	2	/	○	4		
//								
//								
1 개월 평균	19	23	17	/	○	23		

『육대요령 교리도』 : ① 경과 보고 , ② 감각 (感覺) 제출 , ③ 의두 (疑頭) 양해 (諒解), ④ 정기 (定期) 입선 (入禪). ⑤3·6 일 예회 (例會) 참례 , ⑥ 왕반시 (往返時) 득실 대조

기타 매일 성적 기재 양식

1) 사업 성적 : ① 본회 (本會) 중 (中), ② 육친 (肉親) 관계간 , ③ 기타 외인간 (外人間)

2) 부채표 : ① 본회 중 , ② 육친 관계간 , ③ 기타 외인간

3) 의견 제출 : ① 공부 방면 , ② 사업 방면 , ③ 생활 방면 .

4) 계문 대조 : ① 보통부 10 계문 , ② 특신부 10 계문 , ③ 법마상전급 10 계문

단원 매년매월 성적 조사법 양식

공부 성적					사업 성적			부채표			의견 제출		
염불 좌선	교과서 ()			취사 실행	정신 근고	육신 근고	전곡 혜시	정신 근고	육신 근고	전곡 혜수	공부 방면	사업 방면	생활 방면
	음강	의지 해석	한자 연습										

『단규』 「세칙」의 신분보고 양식

신분보고표 [표지]	① 신분보고 내용 설명의 개요 , ② 등급을 정하는 법
부당 등급	총 34 항
당연 등급	총 22 항
수지 대조	혜수•◌혜시 / 수입•◌지출 / 대부•◌차용

제 9 회 하선 해제일부터 입선인 성적 구분

- 원기 14 년 (1929) 8 월 6 일은 제 9 회 하선 해제일 (『단규』 발행 이전).
- 제 9 회 선기 (禪期) 부터 입선인들의 성적을 2 종 (種) 으로 구분 .
- 검사위원들 직접 판정 .

입선인 성적 구분

성적 종류	성격	구별 내용
연습성적	매일 6 과정 훈련에 대한 등급 판정	2 반 체제 . ① 갑반 : 좌선 · 염불 · 경전 · 강연 · 회화 · 일기의 6 과정 전부 훈련 받음 . ② 을반 : 6 과정 내 일기만 염불로 대행 .
현실성적	육근 작용에 대한 교무부 검사위원 판정	2 등급으로 **신분 검사** : **① 당연등급 22 조 + ② 부당등급 33 조**

- 연습 성적과 현실 성적은 체 (體)· 용 (用) 의 관계 .
- 선기 입선 (入禪) 성적 가운데 ‘현실 성적’ 의 내용이 『단규』 의 「신분 검사」로 반영됨 .

교단 초기 신분 검사 관련 내용

시기	내용	세부 내역
원기 12 년 (1927) 2 월	대종사 공부인 신분 검사법 발표	① 자신의 기질 (氣質) 변화와 사죄취복 (捨罪取福) 의 길 스스로 촉진 , ② 교단의 인재 (人材) 선택에 필요한 방법 얻음 . **동선 해제시 입선인 및 간부 요인 , 연 1 회 실시 .**
원기 12 년 (1927) 3 월	『규약』 발행	「세칙」: ①‘ 임원 선거 규약’ - 육명부 관련 , ②‘ 상벌 규약’ - 승급 및 강급 , ③‘ 임원 명의 순서’ - 신분검사원
원기 14 년 (1929) 8 월	《월말통신》 제 18 호	**입선인 및 임원** , 신분검사법 **연 2 회 실시**
원기 16 년 (1931) 7 월	『단규』 발행	「세칙」, 신분검사법 : 최초 신분 검사법 내용과 동일 , **동선 해제시 연 1 회 실시 .**
원기 17 년 (1932) 4 월	《월말통신》 제 35 호	대종사 법설 , 소소한 7 종의 심병 (心病) 다수 발생시 , **승급 지체 및 강급** 경고 .

‘ 신분보고 내용 설명의 개요’

1. 이 신분보고를 행함은 연구인의 시비선악을 알며 또는 심지 (心志) 의 주착 (注着) 한 바와 행동의 본말을 알아 수양과 연구와 취사법을 인도 (引導) 하는 데 그 적당한 방법을 득하게 위함이요 ,
2. 이 신분을 매년 제 2 학기 동선 해재시에 1 차 씩 보고하여 본회 (本會) 교무부 (教務部) 에 접수하여 두었다가 일후 (日後) 본회에서 용인 (用人) 하는 데 그 선정 (選定) 방법에 필요를 득하기 위함이요 ,
3. 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한 후에 기질변화 (氣質變化) 가 잘 되었는가 대조 (對照) 하며 또는 공부를 시작한 후에도 거년 (去年) 의 정도와 금년의 정도를 대조하여 기질변화의 잘 되고 못되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 .

신분 검사의 의의

1) 단원 (團員) 으로 하여금 삼학 (三學) 에 있어서 적당한 방법을 얻게 하자는 것 .
2) 매년 동선 (冬禪) 해재 때에 교무부에 보고하여 교단에서 단원을 임원 (任員) 등으로 활용하는 자료를 얻기 위함 .
3) 공부의 전후로 또한 공부 이후의 매년 달라진 기질 변화의 정도를 알기 위함 .

부당 등급 + 당연 등급

부당 등급 : 34 항목

- 『규정』에 명시된 각 부 (簿) 의 10 계문을 합한 30 계문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한 것 + 기타 '①쟁힐 ·② 허위 ·③ 편심 ·④ 아상'의 4 항목

당연 등급 : 22 항목

① 유래지위 (由來地位), ② 발원 (發願), **③ 신식 (新識), ④ 구식 (舊識),** ⑤ 선문 (鮮文), **⑥ 한문 (漢文),** ⑦ 산술 (算術), **⑧ 어법 (語法), ⑨ 농업 (農業), ⑩ 상업 (商業), ⑪ 공업 (工業),** ⑫ 신성 (信誠), ⑬ 수시변역 (隨時變易), ⑭ 심사결단 (心事決斷), ⑮ 보화 (普化), ⑯ 공심 (公心), ⑰ 은악 (隱惡), ⑱ 양선 (揚善), ⑲ 성리 (性理), ⑳ 전일 (專一), ㉑ 신체건강 (身體健康), ㉒사실 (事實)

신분검사의 주체 (단원 + 단장 ?)

『규약』「세칙」 '임원 명의 순서' 나열

① 총재 (總裁), ② 회장 (會長), ③ 서무부장 (庶務部長), ④ 교무부장 (敎務部長), ⑤ 연구부장 (硏究部長), ⑥ 농업부장 (農業部長), ⑦ 상조조합부장 (相助組合部長), ⑧ 식사부장 (食事部長), ⑨ 세탁부장 (洗濯部長), **⑩ 신분검사원 (身分檢查員),** ⑪ 문부검사원 (文簿檢查員), ⑫ 재무 (財務), ⑬ 서기 (書記), ⑭ 빈객응접원 (賓客應接員), ⑮ 감원 (監院), ⑯ 간병 (看病), **⑰ 가산수찰원 (家産修察員),** ⑱ 물품장주 (物品藏主), ⑲ 공양주 (供養主), ⑳ 물품구입원 (物品購入員), ㉑종두 (鍾頭), ㉒감욕 (監浴), ㉓수화감임 (水火監任), ㉔회중사자 (會中使者)

『단규』 「세칙」 제 9 조

" 단장은 모든 교리와 제도로써 매월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여 감정하지만 , 그 교리와 제도로 훈련을 받은 결과 기질 변화 (氣質變化) 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를 대조하기 위하여 , 매년 연말이면 단원의 신분을 검사하여 교무부에 보고한다 ."

* 현재 정기훈련 해제시에 스스로 공부 평가 .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의 관계

- 원기 10 년 (1925) 3 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제정 발표 .
- 제 1 회 하선 (夏禪): 원기 10 년 (1925) 5 월 6 일부터 3 개월 . 제 2 회 동선 (冬禪), 11 월 ~ 3 개월 .
- 원기 16 년 5 월 6 일 ~ 3 개월 , 제 12 회 하선 (夏禅). 11 월 6 일 ~ 3 개월 , 제 13 회 동선 .
- 원기 24 년 (1939), 6 월 6 일 ~ 제 28 회 총부 하선 결제 . 제 29 회 동선 결제 .

- 원기 56 년도 : 동래수양원
 - “ 동하 6 개월간 경남일대 교도 다수 입선하여 수양시간을 주로 하는 선과정을 마쳤다 .”
 - 하선 (결제 5 월 3 일 , 해제 8 월 3 일) + 동선 (결제 12 월 3 일 , 해제 3 월 3 일)

- 3 개월 하선 + 3 개월 상시훈련 + 3 개월 동선 + 3 개월 동선의 순환 (원기 10-24); 약 14 년간 .
-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감 .

단규 부칙 (附則)

1. 본 단규 원 · 세칙 (原細則) 은 본회 창립한도 (創立限度) 제 3 회 (回) 36 년 이내에는 수시 (隨時) 가감 (加減) 하기로 함 .

2. 본 단규를 가감할 시는 교무부 기초 (起草) 에 의하여 정수위단 (正首位團) 의 심의 (審議) 를 거쳐 종법사 (宗法師) 의 감정 (勘定) 으로 결정함 .

「세칙」의 특징

1)상세한 상시 일기 기재 방식

- 《월말통신》 : 예회 (6·26 일)/ 단회 (16 일), 일기 기재 방식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 및 교육 .
- 『단규』 「세칙」에서 일기 기재 방식 통일 및 세밀화 . 누구라도 바로 상시 일기 기재 가능하도록 .

2)의견 제출의 중요성

- 『단규』 「총론」: 대종사 단독으로 전체 회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훈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조단 (組團) 을 한다고 밝힘 .
- 대종사의 가르침이 하향 (下向) 으로 전달되는 방식 .
- 의견 제출은 단원들이 단장들에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향식 (上向式).
- 교화단은 상의 (上意) 하달 (下達), 하의 (下意) 상달 (上達) 되는 쌍방향식 통치 제제 .

3)상시 일기 기재 - 결과 매월 단장에게 보고 - 교무부 보고 - 연말 신분검사 .

「세칙」의 특징 (계속)

4)상시 일기는 상시 훈련 진척을 위함 .

- 상시 훈련이란 곧 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는 훈련 .
- 물론 여기에서 재가 (在家) 란 전문 (專門) 입선 (入禪) 하지 않은 상태 .
- 즉 , 재가가 신분으로서의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라는 의미 보다는 상시 훈련의 상황에 놓인 공부인이라는 의미로 파악됨 .
- 이는 대종사의 인도상 (人道上) 요법을 강조하는 측면 , 그리고 불법의 시대화 · 생활화 · 대중화와 관련 .

5)상시 일기의 내용이 폭넓고 방대 : 후에 간소화된 일기법이 나타나는 계기 .

6)『단규』의 수정

- 교무부 기초 - 정수위단 심의 - 종법사 감정으로 결정 (「부칙」)
- 이후에 수정되었다는 기록은 없음 .
- 「세칙」의 측면에서 본다면 , 이는 곧 상시 일기의 형식 및 내용이 대종사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상시 훈련의 기본 방침이며 방식 .

소결

원불교 상시 일기법의 내용이나 그 실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세칙」에 바탕하여야 함 .

- 물론 현 『정전』에도 상시 일기법이 있으나 , 이는 매우 간소화된 내용 .
- 구체적 기재법은 생략됨 .
- 현 『정전』의 상시 일기법의 기재 방식은 『단규』「세칙」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

4 종 (상시) 일기법의 제정 (원기 23·1938)

① 정식일기 (正式日記)·② 간이일기 (簡易日記)·③ 유무념 대조 ·④ 태조사

《회보》	발행 연월	제목	간이 일기 내용
제 47 호	원기 23(1938), 9.	사종일기 시행에 대하여 (교무부)	(간이일기 실행인 명단)
제 48 호	원기 23(1938), 10.	사종일기 시행에 대하여 / (전월 계속 : 교무부)	(간이일기 실행인 명단)
제 49 호	원기 23(1938), 11.	사종일기 시행자 발표 (전월 계속)	(간이일기 실행인 명단)
제 59 호	원기 24(1939), 10.	일기에 대한 단장 조사 방법 (교무부)	‘ 간이일기 매월 조사하는 방법’

* 《회보》 제 48~50 호 (원기 23·1938) 에서는 ‘각 지방 현재 일기 실행인 씨명’ 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 유형별 (정식일기 / 간이일기) 실행자 명단 연속 발표 .

* 제 50 호 : 상시 일기법이 시행된 최초로부터 **만 10 년간 (원기 13- 원기 23) 계속 실행한 회원들을 특별히 조명**하는 기사 실림 .

상시 일기법의 의의

[1] 상시 일기의 정신적 원형은 『성계명시독』

[2] 원기 10 년 (1925) 은 원불교 훈련법과 평가의 실제적 원년 (元年)

[3] 초기 교단 훈련 실시 내용

- 3 개월 상시 훈련 + 3 개월 동안 하선 + 3 개월 상시훈련 + 3 개월 동선 (유기적 순환 구조).
- 상시 훈련과 정기 훈련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증진시킴 .

상시 일기법의 의의 (계속)

[4] 상시 훈련은 정기 훈련으로 이어지고 , 정기 훈련은 다시 상시 훈련을 통하여 점검 .

- 상시 일기법도 정기 훈련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 그 의의가 명료하게 드러남 .

[5] 훈련법의 제정과 평가 제도

- 대종사께서 영산에서 처음 회상을 건설하시고 변산에서 삼강령 · 팔조목 · 사은 · 사요의 기본 교리를 제정한 다음 , 그 교리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함 . 이는 학력 고시를 통하여 학위 등급으로 귀결됨 .
- 전체적인 시간적 구성을 보면 현 『정전』의 '①총서편 -② 교의편 -③ 수행편' 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과 일치 .

[6] 단원들의 매일 성적 기재

- 매일 학습 상황을 점검 + 계문 대조 + 수지 대조
- 공부와 사업의 양면에 있어서 『단규』의 표어인 **'일일신 (日日新) 우일신 (又日新)'** 을 실천하도록 하여 단원들의 혜 (慧)· 복 (福) 을 병진 (竝進) 하게 함 .

상시 일기법의 의의 (계속)

[7] 문자 (文字) 와 서식 (書式) 을 통한 계산 (計算) 이라는 과학적 방법 활용

- 근대 교육학적 방법 차용
-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이 주관적인 막연한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도록 이끌고 있음 .
- 여타 종교의 수행법에서는 흔히 찾을 수 없는 매우 정밀하고 물샐 틈 없는 공부법 .

[8] 단 활동에서 단원들의 상시 일기 기재와 점검이 가장 중요한 핵심

[9] 상시 일기는 학위 등급과 연관 , 신분 검사는 동선 · 하선의 정기 훈련과 연관 , 정기 훈련에서는 입선인의 학력을 고시하여 학위 등급을 판정 .

- 공통된 내용은 삼학으로 집약
- 상시 일기는 공부와 사업의 근간 .

상시 일기법의 의의 (계속)

[10] 평가의 중심에는 삼학이 근간

[11] 신분검사의 내용

- 단원들 , 혹은 정기훈련 입선인 (入禪人) 의 실력을 스스로 점검 .
- 교단의 용인 (用人) 에 활용 .

[12] 의견 제출의 중요성

- 간이 일기에서도 확인이 됨 .
- 단 활동에 있어서 의견 제출은 교단 발전에 기여하는 한 축 .

상시 일기법의 의의 (계속)

[13] 『단규』 개정의 엄중함

- 『단규』「세칙」에 밝혀진 상시 일기법 가운데 '정식 (正式) 일기'의 내용을 상시 일기법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 물론 처음부터 '유무념'과 '태조사' 법도 시설 , 후에 4 종 일기로 분화 .
- 이는 다만 대중의 편의를 위한 측면 .
- 현대는 대체로 노혼 (老昏)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교육 평등이 실현되어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않은 경우는 희소 .
- 4 종 일기 가운데 '정식 (正式) 일기'를 '원 (原) 일기' 라고 칭한 부분과 일치
- 물론 대중의 근기를 따라서 활용하도록 하는 양방향을 고려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 .

[14] 상시 일기 기재에 대한 지속적 교육

- 단원들의 일기 기재에 대한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재 방법에 대한 교육의 노력이 함께 수반됨 .

향후 과제

① **현 교화단의 상시 일기 위상 점검 :** 단 활동의 중심 .

② **단장 역할의 확대 :** 단장은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증진시키고 , 신앙 수행에 대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함 .

③ **신분검사 시행에 대한 점검 필요 :** 신분검사는 스스로 행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 단장을 통하여서도 보다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 . 아울러 교단 인재 (人材) 선발의 기본 자료가 되도록 활용 .

④ **정기훈련에 대한 점검 :** 교단 초창기에서는 실제로 상시 훈련과 정기 훈련이 맞물려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촉진 .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정기훈련이 약화됨 . 이에 대한 점검 필요 .

⑤ **법위 승급에 대한 점검 :** 교단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인의 실력을 점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승급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 . 향후 이에 대한 연구 필요 .

현행 상시훈련 및 정기 훈련 실행의 전반적 약화

1) 출가와 재가 전부분에 있어서 정기훈련이 거의 명맥만 살아 있는 형편 .

2) 정기훈련이 약화된 상황에서 상시훈련이 오히려 중요하게 부각됨 .

3)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상시훈련에서 상기 일기의 기재와 점검과 단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함 .(+ 감각 + 감상 + 의두 해의 + 심신 처리 + 의견 제출)

4) 훈련법을 통한 법위 사정 점검 필요 .

총결

원불교 수행법 가운데 상시 일기만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

그러나 , 대종사께서는 당시 야학 (夜學) 을 중지시키면서까지 상시 일기 기재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였음을 주목할 필요 있음 .

향후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단 활동에 있어서 상시 일기의 기재에 대한 지속적인 장려 및 교육과 훈련 필요 .

형식적인 기재를 넘어서서 사실적인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교단적인 관심 필요 .